

중국 경제법의 체계와 현황

金 永 春*

금세기 70년대 말에 이르러 중국은 《문화대혁명》과 같은 정치운동역사를 마무리짓고 경제건설을 주요한 임무로 하는 새로운 역사시기에 진입하였다. 이와 동반하여 법영역에서는 새로운 경제건설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보증으로서의 경제법체건설임무가 시급히 제기되었다. 경제법이 독립적인 법영역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하여 국내 법학자들은 깊은 연구와 더불어 상반되는 견해들도 보였으나, 결국은 논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세우면서 연구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에 의하여 80년대 초에 경제법은 독립적인 법부문으로 그 지위가 확정되었고, 10여 년의 경제개혁과 개방을 순조롭게 실시하고 추진하는데 유력한 법률적 보장을 제공하였다.

중국의 경제개혁의 주요한 목표는 경제체제를 개혁하는 것으로서 1992년도에 최종적으로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경제질서를 건립하고 전면적인 경제향상을 촉구하는 데 필요한 경제법이론과 체계에 대한 연구는 법학계의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필자는 중국 경제법의 역사적 발전을 간략하게 총괄하면서 경제법의 조정대상과 체계의 적절성에 대하여 다시금 맥박을 짚어 보고자 한다.

1. 독립적인 법부문으로서의 경제법의 생성과 발전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정부는 입법형식을 통하여 식민지 통치의 도구로 되었던 외래 제국주의와 국내 관료자본주의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의 소유로 하고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자본주의 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 국민경제전반에 대한 계획화발전, 공업·농업·상업 업체에 대한 세금징수 등 일련의 법령을 제정하고 반포하여 건국 최초의 경제법군(群)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50년대 말부터 진행되었던 《좌》적인 정치운동의 영향으로 법허무주의가 성행하면서 중국의 법제는 대폭적으로 퇴보하여 많은 대학교의 법학과마저 취소되었으며, 7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경제법은 독립적인 법부문으로 승인받지 못하였고 법학과로서의 경제법과도 설치되지 못하였다.

1978년 12월에 열린 중공 제11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임무를 계급투쟁

* 중국 연변대학 법률학부 부교수, 1994. 6. 20~1995. 3. 15 서울대학교 초청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

을 기본고리로 하였던 것을 대규모적인 경제건설로 하기로 결정하여 경제법제가 다시금 발전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전기(轉機)가 있었다. 이 전기가 중국 경제법이 독립적인 법부분으로 될 수 있었던 역사적인 원인이라고 하겠다. 금세기 60년대 중기로부터 70년대 말기는 일본, 한국 등 경제발전도상에 처해 있었던 나라들에게는 중요한 경제진흥 전환시기가 되었던 반면에 중국은 동 시기 《문화대혁명》의 결과로 경제가 거의 붕괴상태에 직면하여, 경제적으로 파멸되어가는 나라를 신속히 되살리기 위하여 개혁과 개방을 실시하는 데는 경제법의 보장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80년대 초에 국가에서는 경제법연구항목을 국가의 철학, 사회과학 제6차 5개년 연구계획에 정식으로 삽입하였고, 국가교육위원회와 학위위원회에서는 경제법전공을 비준하고 경제법석사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하여 실제적으로 경제법의 독립적인 법부분으로서의 지위가 확립되었고, 여러 대학교에 경제법학과가 설치되어 본격적인 경제법연구가 진행되었다.

경제법의 생성은 중국경제법제건설을 대폭적으로 추진하는 데 거대한 동력으로 되었다. 국무원에서는 중국경제법연구센터를 건립하여 경제법규의 제정을 계획화, 규범화하여 각 부문에서 제정한 경제법규간의 모순을 조정하였으며 경제입법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여 주었다. 각 지방정부에는 층층으로 경제법규 연구기관을 설립하였고, 각급 법원에는 경제재판정을, 각급 검찰원에는 경제검찰기구를 설치하였고 경제공중처, 경제변호사사무소 등 경제사법기구가 잇달아 건립되었다.

80년대에 진입한 이후 중국 경제법의 발전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체로 3단계를 거쳐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단계는 1980년도부터 1986년도까지로 경제법 초창기의 주요한 연구내용은 경제법의 조정대상, 개념, 원칙, 특징 등 기본적인 이론문제와 체제이며 조정대상에 대한 연구가 중심으로 되어 법학계의 중시를 불러 일으켰었다. 이 시기에 법학계에서는 경제법의 독립적인 지위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논쟁을 벌였는데 주요하게는 경제법과 민법의 조정대상의 충돌로서 경제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심화되는 경제법이론연구와 경제법이 사회의 경제발전에 끼치는 거대한 영향은 결국 경제법의 독립적인 법부분으로서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고, 논쟁에 기본상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 시기는 중국 역사상 경제입법이 흥성·발단된 시기로서 많은 중요한 경제법규들이 제정, 공포되었다. 주요한 법률들로는 森林法(試行), 環境保護法(試行), 中外合資經營企業所得稅法, 個人所得稅法, 經濟合同法, 外國企業所得稅法, 商標法, 文物保護法, 統計法, 專利法, 會計法, 涉外經濟合同法, 草原法 등이 있다.

둘째 단계는 1986년 4월 중국민법통칙이 제정, 반포된 때를 계기로 하여 1992년까지의 경제법의 안정적 발전시기이다. 민법의 조정대상을 《통칙》 입법형식으로 규정함으로써 다년간 진행되었던 민법과 경제법의 조정대상에 대한 대립된 논쟁을 기본상 마무리짓게 되

있으며 경제법 조정대상에 대한 의견도 대체로 일치를 보았다. 이 시기에 경제법의 연구 중점은 전면적인 경제개혁문제가 되어 상품경제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연구, 국가기업의 활력제고에 관한 연구, 국가기업의 파산에 대한 연구, 세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연구, 중의 합자, 합작기업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많은 연구성과가 나타났으며 경제입법면에서도 새로운 발전을 보였다. 이 시기에 外資企業法, 漁業法, 礦山資源法, 土地管理法, 企業破産法(試行), 外國人投資企業所得稅法, 中外合作經營企業法, 審計法, 全民所有制工業企業法, 海關法, 水法, 涉外技術轉讓合同法 등 중요한 법률들이 제정, 반포되었고 中外合資經營企業法 등 법률들이 개정되었다.

셋째 단계는 1992년도에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목표를 확정한 때를 계기로 하여 지금까지의, 중국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시기의 경제법의 새로운 발전단계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목표의 확립은 경제법영역에 더욱 폭넓은 연구활동무대를 제공하였다. 법학자들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불 때 법제경제라는 새로운 논단을 제기하였으며 시장경제관계를 조정하는 경제법의 연구가 심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國有企業의 法人財產權문제, 勞動力市場문제, 증권거래소문제, 물가관리문제, 소비자권익보호문제, 정당한 자유경쟁의 보장에 관한 문제, 대외개방의 심도 등 문제에 대한 법률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會社法, 消費者權益保護法, 反不正當競爭法, 對外貿易法 등 중요한 경제법률들이 제정·공포되었다. 그리고 經濟合同法, 專利法, 商標法 등 법률을 시장경제체제에 적응되도록 개정하여 새로운 시장경제체제의 保障法群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 경제법역사를 총괄하여 볼 때, 경제법은 분산된 상태에서부터 형법, 민법과 병존할 수 있는 독립된 법부문으로 발전하였고, 수많은 경제법규들은 법체계에서 제일 방대한 경제법群을 형성하여 중국의 경제건설과 법제건설을 힘있게 추진하였으며 경제법영역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경제법 자체의 이론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심화되면서 새로운 시장경제체제의 조건에 적용할 수 있는 특이한 경제법이론과 체계를 건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닦아 놓았다. 경제법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법부문임을 증명한 것이다.

2. 중국 경제법의 조정대상

중국경제법이 독립된 부분으로 확정된 것은 사회관계영역에 자기의 독특한 조정대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1978년 이전 法治가 아닌 人治가 위주로 된 체제하에서 허다한 법영역이 공백으로 되어 있었다. 비록 민법이 장기간 많은 경제관계를 규제하고 있었지만 사회경제가 급속히 변화, 발전함에 따라 민법의 전통적인 이론, 원칙과 체계로서는 조정하기 적절하지 못한 제한성을 드러내었다. 국가의 계획경제관리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허다한 경제관리, 경제협조관계 및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섭외경제관리, 경제협

조관계 등 경제관계는 민법이 아닌 새로운 경제법에 의하여 조정되어야 하였다.

(1) 경제법의 조정대상문제에 관한 제 학설

경제법 초창시기에 경제법의 조정대상문제를 둘러싸고 법학계에서도 여러 차례의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점을 요약하면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장이다.

1) 大民法說

이 설은 사회의 모든 경제관계는 민법의 조정대상으로 되어야 하며 경제법은 자기의 특이한 조정대상이 없으므로 독립적인 법부문으로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민법의 平等, 自願, 等價交換 등 기본원칙에 따라 민법의 조정대상범위의 국한성을 부인한 것이다. 민법의 상술한 원칙과 《私》적인 성격에 의하면, 《公》적인 경제관계 전부 및 관리와 피관리관계로 표현되는 불평등 경제주체간의 경제관계 전부를 민법의 조정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평등한 주체간의 경제관계와 불평등한 주체간의 경제관계의 상호연계성과 침투성에 의하여 일부분의 불평등 주체간의 경제관계를 민법의 조정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縱向說

이 설은 경제법은 국가의 경제관리관계 즉 상하급주체간에 발생하는 관리와 피관리, 명령과 복종의 縱的인 경제관계만 조정하고 평등한 주체간의 橫的인 경제협조 관계는 전부 민법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설은 국가나 기업의 縱的인 경제관리관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橫的인 경제협조관계간의 연관성을 무시하였다. 고정된 시각으로 사회의 경제관계를 고찰한 결과이다.

3) 大經濟法說

이 설은 경제법의 經濟性 특징에 의하여 사회의 전부의 경제관계를 조정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설은 경제법의 經濟性만 고려하고 다른 한 특징인 管理性은 홀시하여 경제법의 핵심인 국가의 국민경제계획관리에 대한 법조정 원칙을 떠나 국가의 계획 경제관리와 관련이 없는 경제관계도 경제법의 조정대상으로 확정함으로써 경제법의 본질과 기본특징을 말살하였다.

상술한 3가지 견해는 법의 조정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합리성과 과학성을 상실한 편면적인 주장이라 하겠다.

4) 綜合說

이 설은 상술한 주장들의 편면성을 극복하고 경제법은 국가의 경제관리와 기업의 경제관리행위로 하여 발생하는 경제관리관계를 주요한 조정대상으로 하되 상술한 경제관리관계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평등한 주체간의 경제협조관계도 조정대상으로 한다는 주장이다. 이 설은 경제법은 실제상 관리법이라는 주요한 특징을 살린 동시에 경제관계간의 칼로 분명히 벨 수 없는 연관성을 제대로 착안하여 경제법의 조정대상을 한층 더 합리화시

킨 주장이다.

(2) 경제법의 조정대상

경제법의 조정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경제법의 체계를 정확히 확정하며 다른 법 부문과의 관계를 바르게 처리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된다. 경제법의 조정대상을 모두 쓴다면 국가의 경제관리기관, 기업과 기타의 경제업체 및 개인간에 발생한 경제관리 관계와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평등한 주체간의 경제협조관계 및 섭외경제관계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제관계이다.

1) 경제관리관계

경제관리관계란 국민경제와 同業 또는 부문 및 기업에 대하여 관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관계를 가리킨다. 경제관리관계는 국민경제관리관계, 부문 및 동업경제관리관계와 기업경제관리관계로 나뉜다. 국민경제관리관계는 한 국가기관과 다른 한 국가기관 또는 경제업체 및 개인간에 국가가 국민경제 전반에 대하여 관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관계이다. 부문 및 동업경제관리관계란 국무원 산하의 각 경제관리부문 및 동업과 그에 예속된 경제업체 및 개인간에 해당 부문과 동업에 대한 관리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관계를 가리킨다. 기업관리관계란 기업소 내부의 관리기관과 산하 각 부문 및 종업원간에 기업에 대한 관리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관계를 가리킨다. 상술한 관계는 모두 영도자와 피영도자, 관리자와 피관리자, 감독자와 피감독자 사이에 발생한 경제관계라는 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2) 경제협조관계

경제협조관계란 국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계획관리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평등한 주체간의 상호경제협조관계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국가기관간, 부문 및 동업간 기업 및 기타 경제업체나 개인간 또는 상술한 주체들 사이에 국가의 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생산, 공급, 운수, 판매 등 경제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상호협조관계이다. 이 관계는 주체간의 평등성과 등가교환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3) 경제업체 내부의 경제관계

내부경제관계란 同一한 경제업체 내의 관리기관과 그 산하의 기관, 부문 및 종업원간에 발생한 경제관리와 경제협조관계를 가리킨다.

4) 섭외경제관계

섭외경제관계란 중국의 법인이나 기타의 경제업체와 외국의 법인이나 기타의 경제업체 및 개인간에 경제거래로 인하여 발생된 사회관계를 가리킨다. 섭외경제관계는 국내법으로 조정하므로 국제경제법의 대상이 아니라 국내경제법의 대상이 된다.

경제관리와 경제협조관계는 모두 발달한 상품경제의 조건하에서 발생된 경제현상으로서 그들간에는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통일성도 존재한다. 경제협조관계는 경제관리가 생성되

고 발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초가 되며 만약 사회화대생산 가운데서의 분업과 협조가 없었더라면 현대화된 경제관리도 발생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경제관리는 경제협조관계를 발전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넘어가는 시기에 국가는 점차적으로 거시적인 계획경제수단으로 국민경제 전반에 대하여 통일적인 관리를 실시하기 때문에 국민경제관리관계와 사회조직의 경제협조관계도 여전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경제관리관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협조관계를 경제법의 조정대상으로 확정하는 것은 민법의 조정대상인 공민의 財産관계 및 人身관계와 구별되며 행정법의 조정대상인 行政組織管理관계와도 구별되므로 합리성과 과학성을 띠고 있다고 본다.

(3) 경제법의 조정대상과 민법의 조정대상의 구분

경제법과 민법은 각기 일정한 경제관계를 조정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정대상의 상호연계와 침투는 불가피한 것이어서 각자의 조정대상의 범위를 확분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그 경계선을 명확히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경계선을 그어 주는 것이 두 법부문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는 데 필요할 것이다.

平等, 等價, 自願을 원칙으로 하는 민법은 그 특징에 의하여 평등한 주체간에 발생한 경제관계를 주요한 조정대상으로 하게 된다. 다만 민법은 주요하게는 국민개인간에 발생된 私的인 경제관계를 조정대상으로 하며 국가의 계획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민개인과 法人간에 발생한 경제관계도 조정할 수 있다.

경제법은 法人간에 발생한 公的인 경제관계를 주요한 조정대상으로 하며 국가의 국민경제관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法人과 公民個人간에 발생한 경제관계도 그 조정대상으로 할 수 있다.

경제법은 경제관리성을 띤 경제관계를 주된 조정대상으로 하지만 민법은 경제협조성을 띤 경제관계를 주된 조정대상으로 한다.

경제법은 생산영역과 유통영역에서 발생한 경제관계를 주된 조정대상으로 하지만 민법은 주로 소비영역과 유통영역에서 발생한 경제관계를 조정대상으로 한다.

3. 중국 경제법의 체계

경제법의 체계는 경제법의 조정대상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법의 목적과 제반원칙을 충분히 체현함으로써 그 과학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술한 경제법 조정대상에 대한 연구는 경제법의 범위를 기본상 확분하였으므로 경제법체계에 대한 연구에 기초를 닦아 놓았다. 사회의 주요한 경제관계들을 조정하는 경제법은 그 어느 법보다도 사회의 경제질서와 경제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새로운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시기에 경제법이론과 체계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중국의 시장경제체제는 의연히 사회주의 公有制를 기초로 한다. 국가경제발전의 불균형성으로 각 지구마다 公有制成分이 접하는 비례가 다를 수 있지만 총체적으로는 公有制을 主體로 하고 國有制를 主導로 하는 生産關係가 持續될 것이다. 이 점에서 사유제를 기초로 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의 주요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둘째, 중국의 시장경제체제는 국가의 거시적인 계획통제하에서의 시장경제로서 정부와 국가의 경제에 대한 관리는 직접관리로부터 간접관리로 전환하게 된다. 즉 국가의 경제 관리는 행정수단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수단을 위주로 하고 법률적 수단과 필요한 행정수단을 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셋째, 새로운 시장경제체제를 건립하는 목적은 최대한도로 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국가의 綜合國力을 증강시키며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제고하여 공동으로 부유해지는 것이다.

넷째, 중국의 시장경제체제는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으며 경제발전이 매우 불균형한 조건하에서 건립되는 것이다.

경제법의 범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어떤 학자는 경제법은 마땅히 관리법을 핵심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다른 어떤 학자들은 마땅히 기업법을 핵심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새로운 경제체제와 경제법의 특점을 고려하여 경제법은 마땅히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수호하는 데 기본보장으로 될 수 있는 경제관리법을 핵심으로 한 경제법체제를 세워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경제법학체제는 다음과 같은 5개 층차로 조성된다.

(1) 理論經濟法(總論)

경제법의 기본이론 부분으로서 경제법의 역사, 조정대상, 법체제에서의 지위, 기본원칙, 경제법주체, 권리와 의무 및 경제책임제도를 포함한다.

(2) 經濟活動管理法

實體法의 핵심부분으로 計劃法, 豫算法, 稅收法, 金融法, 反不正當競爭法, 物價法, 證券法, 消費者權益保護法, 社會保險法, 自然資源法, 環境保護法, 經濟合同法, 工業產權法 등 내용을 포함한다.

(3) 部門經濟組織法

企業法을 중심으로 工業企業法, 農業法, 商業法, 交通運輸法, 基本建設法, 公司法와 破產法으로 조성된다.

(4) 經濟監督法

경제법 주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감독과 檢査를 목적으로 한 會計法, 統計法과 審計法을 포함한다.

(5) 涉外經濟法

중국의 경제주체와 외국의 경제업체 및 商人간의 경제관계를 규제함을 목적으로 한 법 영역으로서 外商投資企業法, 對外貿易法, 涉外經濟, 技術合同法 및 海關法 등 법률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경제체제개혁의 장기성을 고려하면 경제법의 체계는 단기간내에 돌연적인 큰 변화를 期하기보다 漸進적으로 변화하여 최종적으로 완전한 시장경제체제에 적응되는 경제법체제를 건립하여야 할 것이다.

4. 중국 경제법의 現況

10여 년 동안 진행되었던 중국경제개혁은 경제법을 保障手段으로 하여왔고 새로운 시장경제체제의 건립도 경제법의 보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경제체제와 법률제도건설의 이러한 연계성은 《중국 시장경제의 본질은 法制經濟》라는 관념이 국민들의 마음 속에 침투되기 시작하여 중국법제의 진보와 경제건설이 人治로부터 法治에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의 영향으로 중국경제법영역은 새로운 활기를 띠고 있다.

(1) 시장경제관계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활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목표가 확립된 후 전국 범위 내에서 시장경제체제에 적용될 수 있는 시장구조가 초보적으로 건립되었다. 지금 중국에는 3,000여 개의 생산수단시장, 700여 개의 有價證券시장, 90여 개의 外換조절센터, 9,000여 개의 노동력시장이 건립되었으며⁽¹⁾ 價格개혁을 통하여 80% 이상의 생산수단가격, 85% 이상의 농산품가격과 95% 이상의 공업소비품가격이 시장에 개방되는⁽²⁾ 등 적극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반을 쌓고 있는 동시에 시장경제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경제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공백을 메우고 있다. 근년에 公司法, 反不正當競爭法, 消費者權益保護法, 科學技術進步法 등 법률이 제정, 반포되었고 머지않아 證券法, 銀行法, 票據法, 保險法, 社會保障法, 勞動法 등 주요한 법률들이 속속 제정, 반포될 것이다.

(2) 기정법규들을 정리하고 개정하여 完備化하였다.

새로운 시장경제체제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이미 제정, 반포되었던 경제법규들을 대폭 정리, 수정하였다. 헌법으로부터 일반법규에 이르기까지 원래의 계획경제체제를 반영한 내용들을 삭제하였다. 원칙상에서 法人간의 경제계약관계에만 적용되었던 경제계약법을 수정하여 계약주체의 범위를 공민개인관계까지 넓혔다. 稅法도 대폭 수정하여 국내기업과 外資기업의 流轉稅, 企業所得稅, 個人所得稅를 통일하였고 원래의 32종 稅金을 18종으로

(1) 자료출처: 《廷邊日報》 1994년 5월 21일.

(2) 자료출처: 1994년 5월 11일 《'94년도 중국북경국제고급경제논담회의》에서 한 李鐵映 중국 부총리의 연설문.

줄여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도록 하였다. 그외에도 專利法와 商標法도 수정하였다.

(3) 國有企業의 財產權문제에 관한 연구가 심각화되었다.

전국의 공업총생산액 가운데서 국유공업총생산액이 48.3%를 점하는 상황에서 국유기업의 지위와 역할을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국유기업은 결손기업으로서 국가의 支援로 살아가고 있다. 국유기업의 경영상황은 전국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어 국유기업의 재산권개혁을 중심으로 범영역에서의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첫단계에서는 주요하게 국유기업의 재산권과 경영권을 분리하고 기업의 經營自主權利를 확대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독립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法人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결손기업은 집체 또는 개체업자에게 임대시키거나 도급으로 맡기며 심지어 판매하여 私有化시키며, 파산시켜야 한다. 국유기업소의 전부 또는 부분재산을 주식화한다. 국유기업의 法人財產權을 확인하여 국가는 소유권을 保持하여 국유재산 收益權과 중요한 문제에서의 企業決算權 및 企業관리자파견권을 향수하며 자기의 出資에 有限責任을 진다. 기업은 法人財產權을 향유하여 기업재산에 대한 占有, 使用, 收益 및 外分權이 있게 되어 독립적인 자격으로 시장에서 평등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4) 경제법주체의 多元化를 실현하여 평등경쟁의 기초를 닦아 놓았다.

1982년도에 헌법개정을 통하여 개체경제와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한 이래로 私營企業, 個體業, 外國人獨資企業, 中外合資, 合作企業이 대폭으로 늘어나 소유제와 시장경제주체의 다원화가 실현되었다. 현재 공업총생산액 가운데서 국유공업이 48.3%를 점하며 집체소유제공업이 38.2%를 점하며 개체, 사영, 합자공업이 13.5%를 점한다. 전 사회의 상품소매총액 가운데서 국유상업이 41.3%를 점하며 집체소유제상업이 27.9%를 점하며 개체, 사영, 중외합자, 합작상업이 30.8%를 점한다.⁽³⁾ 경제법은 개체, 사영, 중외합자, 합작, 외국인투자 등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 줌으로써 公私主體가 병존하고 평등하게 경쟁하며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5) 경제계획법규들을 개정하여 법령에 의하여 집행되는 指令性적인 계획을 대폭으로 축소하여 經濟수단에 의하여 집행되는 指導性적 계획이거나 완전한 시장조절로 전환시켰다. 1978년 이전의 공업총생산액 가운데서 지령성계획이 95% 이상을 점했었으나 지금은 5% 이하로 줄어 기업의 自主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 주었다.

(6) 대외개방을 더욱 폭넓게 추진하기 위한 設의경제입법이 완비화되었다.

對外開放정책의 실시는 중국에 천지개벽의 변화를 안겨왔다. 연해와 변경지구로부터 시작된 대외개방은 점차 內地에도 확산되었고 산업영역은 제1·2산업으로부터 제3산업으로 급속히 퍼져 나가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5개의 경제특구, 32개의 경제기술개발구, 52개

(3) 1994년 5월 11일 《'94년도 중국북경국고급경제논단회의》에서 한 李鐵映 중국 부총리의 연설문

의 국가급고신기술개발구가 건립되었으며, 300여 개의 市, 縣이 대외로 개방되었다. 전면적인 대외개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새로운 경제관계를 조절하고 새로운 涉外經濟活動秩序를 확립하기 위하여 섭외경제법연구와 입법이 가속화되어 새로운 섭외경제법체계를 건립하였다. 1979년 7월에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제정, 공포함을 시작으로 중외합작기업법, 외국인투자기업소득세법, 개인소득세법, 섭외경제계약법, 섭외기술양도계약법, 해관법, 대외무역법과 기타 섭외행정법규들이 제정, 반포되어 涉外法群을 형성하였다.

5. 結語

중국 경제법은 중국의 경제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그 역할이 점차 국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어 법체계 가운데서의 지위가 중요하게 되었다. 반면에 그 자체의 이론, 개념, 체계면에서 아직도 미흡한 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허다한 현행 경제법규들은 계획경제체제를 기초로 하여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수정을 통하여 개별 조문들을 삭제, 변경하였지만 아직도 총체적인 이론, 체계면에서 낡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민경제영역의 허다한 부문에 기본법률이 제정되지 못하여 법적 依據가 명확하지 못하다. 정부가 경제주체의 활동에 대한 간섭이 지나치게 많아 정부와 경제주체간의 행정예속관계가 법률관계를 초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완벽한 법제경제를 실현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다.

중국의 시장경제의 본질은 법제경제라는 시각에서 볼 때 경제법이 중국 시장경제 발전에서의 역할은 더 한층 심각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人治로부터 法治에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국가의 직접적인 경제관리형식이 취소되고 간접관리로 전환되어 행정간섭이 法治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심화되는 개혁과 개방은 경제법의 발전에 부단히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Résumé〉

Chinese Law of Economics—An Overview

Yong Chun Jin*

This article overviews the legal system of the Chinese law of economics for the transitional period from the socialistic planned economy to the socialistic market economy. The term of “law of economics” is loosely

Both Legislations and academic theories are studied for the same period. For analysis purposes, the short ten-year period, when the law of economics established itself as an independent realm, has been subdivided into three successive stages. For each stag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re compared and contrasted one on another.

The so-called theories of 大民法說, 縱向說, and 大經濟法說 are criticized for their partiality and unreasonableness.

Emphases are placed on illuminat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reas of civil law and law of economics. Legal capacities of a corporation and an individual are scrutinized, aiming at drawing a proper demarcation line inbetween.

The author argues that a new approach should be employed which views China as a comprehensive organism, breathing in the spirits of the period. The author maintains, however, that this approach should not jeopardize the prerogative of the cardinal doctrine of communalism. The author further contends that any drastic legal device be avoided, if practicable, so that evolving community justice could gradually be incorporated into the legal scheme, only through the due courses.

* Professor of Law, Yanbian University